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3년 06월 01일

개운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 *혁	김 *혁 1966-12-03	강원도 원주시 개운로 (개운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5-18
김 *혁	김 *홍 1971-03-13	강원도 원주시 개운로 (개운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5-18